

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

[] 신규 [] 지정 분야 확대·변경 [] 재평가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90일
신청기관	기관명	대표자
	법인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	전화번호
	팩스번호	전자우편
	사업장 소재지 (우) * 사업장 소재지는 지정과 관련된 주요 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적습니다.	
신청분야	별첨	
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·제8조제1항·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고유번호증(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 3. 지정 신청 분야 (사업장별로 신청 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 신청 분야를 적습니다) 4. 인정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,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·검토자료 5. 인정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	수수료 뒤쪽 참조
------	---	--------------

수수료

1.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 또는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

가. 신청 수수료: 50,000원

나. 서류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3일. 다만,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합니다.

다. 현장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평가 일수 × 평가자 수 + 출장여비

2.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분야를 확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

가. 신청 수수료

1) 확대: 50,000원

2) 변경: 20,000원

나. 서류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1일. 다만,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합니다.

다. 현장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평가 일수 × 평가자 수 + 출장여비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